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5. 2 선고 2024나310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5. 2 선고 2024나31049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19 선고 2021가단14747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

담당변호사 허성훈

변론종결 2024. 4. 18.

판결선고 2024. 5. 2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19. 선고 2021가단14747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6. 12. 15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8,343,2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8,343,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“피고(법정상속분 3/13)과”를 “피고(법정상속분 3/13)와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“서울북부지법원”을 “서울북부지방법원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“망인을”을 “망인의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“② 내지 ⑦”을 “③ 내지 ⑦”로 고쳐 쓴다. ○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, 제15행의 각 “455,880,000원”을 “455,888,000원”으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용범, 판사 김민순, 판사 이슬아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1. 여수시 T 대 529㎡ 중 9/529 지분
2. 여수시 U 대 142㎡
3. 여수시 U

[도로명 주소] 여수시 V

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6.05㎡, 끝.

